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8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김정호·박 정·김남희

허종식 • 박희승 • 윤후덕

이수진 • 전재수 • 이훈기

정성호 · 임미애 · 이연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 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 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 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가 있 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법에 규정하고, 방재지구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는 방식이 법 체계 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해일 등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침수방지설

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의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자연재해대책법」"으로, "중 침수위험지구에"를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할 것"을 "할 것(공공건축물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 중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 도제한 등) ① ~ ④ (생 략) 도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 관한 법률 | 제37조제1항제4호 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 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재해대책법 |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 는 지역에-----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건축물(이 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외의 건축물(이하 "민간건 축물"이라 한다)-----다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u>할 것</u>

2. (생략)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u>할 것(공공건축물</u>
에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제
1항·제2항 및 제5항